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

○ 2021년 제17차 건축위원회 : 개최일자 2021.9.9.(목)

○ 방 법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서면심의】

연번	심의종류	건축주	대지위치	공종	층수 (지상/지하)	연면적(㎡)	주 용 도
17-1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분양대상건축물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 외 1인	자양동 57-97 외 2필지	신축	6 / 1	715.96㎡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24)
	【의결내용】	1. 3호 현관문 개폐방향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 2호 화장실 깊이를 조정하여 복도폭을 추가 확보하고, 현관 내부 폭도 추가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주차구역과 간섭이 없도록 지하층 출입구 위치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4. 자전거보관소 및 분리수거함 설치 위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5. 경차 주차구획이 인지되도록 파란색 실선 및 경차 표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6. 공용복도폭 확보를 위해 EPS, PS/PD 앞면 전체를 EPS 판넬로 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7. 각층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하여 입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8. 외벽 기단부의 색상을 변경하기보다는 재질을 변경하여 기단부 차별화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9. 옥상면적을 감안하여 배수 드레인을 추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0.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초공법을 결정하고 허용지지력 계산 근거 및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11. 2층 전이층 보의 원활한 힘의 분배 및 시공시 정착 등에 필요한 X1/Y2열에 전이기둥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12. TG1 부재는 전이층의 거동으로 인하여 전단저항 응력이 크게 작용하므로 상세 검토 후 부재 크기 증가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3. 지상1층 온통기초에 필요한 설계지내력이 Fe=200kpa이므로 지질조사 실시 후 확보 여부 판단하여 구조계산서에 추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지내력 부족 시 보강방안 제시 바람) 14. 내진설계는 KDS 41 20 00 : 2019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초에 의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5. 전이 건축물에 대한 내진계획 및 내진 배근 상세 등의 안전성 확보 계획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16. 필로티 주차장 구간 지진하중에 대한 기둥 상세해석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7. 장애인 승강기 상부 슬래브 타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서포트 하부에서 지지하는 방안 혹은 철골부재 위에 시스템 서포트 설치하는 방안 등) 18. 착공 전 주변 건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계측계획을 세워 민원에 대한 대비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 사항으로 [조건부의결]로 결정 합니다.						
판 정	조건부 의결						

< 기타 심의 조건 : 자양동 57-97 외1필지>

【공통조건】- 해당되는 조건 이행

○ 건축물의 주차.피난.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위치, 수거가 용이한 위치에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확보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위에 조적, 목재, 휀스 등으로 차폐시설(규격 1.5m×2m, 높이 1.5m이상 / 대지 등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을 계획하기 바라며 사용승인 신청 시 설치자료를 제출 할 것.

○ 도시형생활주택 공통조건

- 1층 필로티의 천정은 비가연성재료로 마감하고, 필로티층 상부(2층 바닥)는 내단열로 하거나 외단열로 계획 시 비가연성재료를 사용할 것
- 6층 이상(필로티층 포함)으로 계획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스프링클러 설치할 것.
- 30세대 이상은 입주민의 커뮤니티를 고려하여 20㎡ 이상 또는 세대당 0.5㎡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검토 할 것

○ 6층 이상 건축물 외단열 시스템 시공 시 비가연성(불연·준불연·난연) 외단열재를 사용 할 것.

○ 연면적 2,000㎡ 이상 신축건물은 옥상조경 조성할 것.(그 밖의 건축물은 권장)

○ 6층 이상 신축건물은 실외기 설치공간을 별도 확보할 것.(그 밖의 건축물은 권장)

○ 쾌적한 주거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대지 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 할 것.

- 다가구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 법정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50%이상, 그 밖에 건축물 : 법정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40%이상(단독주택 제외)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환경성능,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해당 건축물 규모에 따라 반영할 것

- 적용대상: 연면적 합계 500㎡ 이상(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31호 참조)

○ 냉방시설의 배기장치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건축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또는 발코니, 노대, 옥상 등에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등 노출하여 설치 시 가림막(30% 이상) 설치, 냉방설비의 응축수, 냉매비관의 외부 노출 금지

※ 기타안내

- 우리구에서는 개별 건축물마다 특색있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상에 설치하는 냉각탑 주변은 갤러리 등을 설치하여 시선차단 및 냉각수 비산 방지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시 가능한 상부 기계실 없는 형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은 빗물저장시설 및 부대설비(필터, 펌프 등)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은 해당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허가시 소방서 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설치 세부 내역 건축 협의 시 검토 할 것임)

- 건축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철저토록 할 것
- 건축 공사시 연결송수관설비 주배관(입상배관) 설치가 완료되면 상시 사용이 가능토록 할 것
- 건축 구조의 내진설계와 별도로 본 건축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필로티 주차장 포함) 내진규정에 적정토록 설계·시공토록 할 것
- 자동화재 탐지설비 수신기는 수위실 등 상시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 할 것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계획 시 수직연소 확대방지용 스프링클러헤드(윈도우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를 계획 할 것 ⇒ 창문에서 0.6m이내, 헤드간 1.8m 간격으로 설치

○ 적용소방시설

- 임시소방시설 : 소화기구, 비상경보장치
- 소화설비 : 소화기구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
- 피난구조설비 : 유도등, 피난기구(완강기)
- 소화용수설비 : -
- 소화활동설비 : -

【 공통조건 】- 해당되는 조건 이행

○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대상 변경
  ▶ (기존)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변경)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필로티형 주차장에도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대상은 필로티에 SP헤드 설치
- 기존, 필로티주차장에 적용된 물분무 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 허용 불가
  ▶ (기존)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제외 가능 => (개선) 스프링클러 반드시 설치
  ▶ 필로티 부분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시 보온을 철저히 한 습식 또는 준비작동방식 등으로 적용(동파우려)

○ 화재 시『수직연소 확대 방지용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 외창 인근 윈도우 스프링클러 헤드 적용
- 스프링클러설비 적용대상 전 층에 적용
- 외기 창문으로부터 0.6M 이내의 위치에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 헤드 간 1.8m간격, 기존헤드와 별개 설치

○ 건축허가 동의 시 외장재 사전검토

- 건축도면 중 외장재료 표기 도면 제출 확인
- 건축허가 동의 시 가연성 외장재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

○ 필로티 주차장있는 대상의 주출입구

- 주출입문을 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은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원칙)
- 여건상 불가시, 주 출입문을 자동폐쇄장치와 연동되는 '갑종방화문' 이상으로 설치
- 화재 시 피난통로로 열기 및 농연 차단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

○ 2021년 제17차 건축위원회 : 개최일자 2021.9.9.(목)
○ 방 법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서면심의】

연번	심의종류	건축주	대지위치	공종	층수 (지상/지하)	연면적(㎡)	주 용 도
17-2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오**	자양동 221-6번지	신축	6 / 1	579.10㎡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11), 근린생활시설

【의결내용】

1. 주차면 6, 8번의 출입에 대한 도로와 주차면의 고저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전거 보관대 크기를 고려했을 때 분리수거함까지의 통행이 어려워 보이므로 분리수거함과 자전거 보관대 위치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2호, 3호의 현관문이 나란히 있고 E/V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각 세대 간섭 및 1호 출입에 지장이 있으므로 2호, 3호 세대의 현관문 위치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4. 각 세대 실외기 설치공간은 바닥 구배없이 평평한 곳으로 계획하시고 노대형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5. 확장형 발코니 부분은 원상복구 시 발코니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개구부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6. 5층 화장실에 상·하층 배관 연결 가능토록 PD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7. 교목 3주 식재 위치는 지상층 발코니와 간섭되지 않으면서 인접 주택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관목은 현재 점식보다는 열식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8.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초공법을 결정하고 허용지지력 계산 근거 및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9. 내진설계는 KDS 41 20 00 : 2019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초에 의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0. 2층 전이층 보의 원활한 힘의 분배와 시공시 정착 등에 필요한 Y4열 C1 기둥의 크기 증가 및 X4~5/Y5열의 B4와 B9 만나는 곳에 기둥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1. 지상1층 온통기초에 필요한 설계지내력이 Fe=200kpa이므로 지질조사 실시 후 확보 여부 판단하여 구조계산서에 추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지내력 부족 시 보강방안 제시 바람)
12. 전이 건축물에 대한 내진계획 및 내진 배근 상세 등의 안전성 확보 계획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13. 필로티 주차장 구간 지진하중에 대한 기둥 상세해석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4. 승강기 상부 슬래브 타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서포트 하부에서 지지하는 방안 혹은 철골부재 위에 시스템 서포트 설치하는 방안 등)
15. 1층 바닥기초 매트 설치 시 상부층 캐노피 끝까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6. 옥탑층 층고가 승강기 설치와 관련 없다면 기준층 층고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7. 착공 전 주변 건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계측계획을 세워 민원에 대한 대비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 사항으로 [조건부의결]로 결정 합니다.
판 정	조건부 의결

< 기타 심의 조건 : 자양동 221-6번지>

【공통조건】- 해당되는 조건 이행

○ 건축물의 주차.피난.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위치, 수거가 용이한 위치에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확보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위에 조적, 목재, 휀스 등으로 차폐시설(규격 1.5m×2m, 높이 1.5m이상 / 대지 등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을 계획하기 바라며 사용승인 신청 시 설치자료를 제출 할 것.

○ 도시형생활주택 공통조건

- 1층 필로티의 천정은 비가연성재료로 마감하고, 필로티층 상부(2층 바닥)는 내단열로 하거나 외단열로 계획 시 비가연성재료를 사용할 것
- 6층 이상(필로티층 포함)으로 계획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스프링클러 설치할 것.
- 30세대 이상은 입주민의 커뮤니티를 고려하여 20㎡ 이상 또는 세대당 0.5㎡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검토 할 것

○ 6층 이상 건축물 외단열 시스템 시공 시 비가연성(불연·준불연·난연) 외단열재를 사용 할 것.

○ 연면적 2,000㎡ 이상 신축건물은 옥상조경 조성할 것.(그 밖의 건축물은 권장)

○ 6층 이상 신축건물은 실외기 설치공간을 별도 확보할 것.(그 밖의 건축물은 권장)

○ 쾌적한 주거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대지 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 할 것.

- 다가구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 법정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50%이상, 그 밖에 건축물 : 법정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40%이상(단독주택 제외)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환경성능,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해당 건축물 규모에 따라 반영할 것

- 적용대상: 연면적 합계 500㎡ 이상(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31호 참조)

○ 냉방시설의 배기장치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건축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또는 발코니, 노대, 옥상 등에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등 노출하여 설치 시 가림막(30% 이상) 설치, 냉방설비의 응축수, 냉매비관의 외부 노출 금지

※ 기타안내

- 우리구에서는 개별 건축물마다 특색있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상에 설치하는 냉각탑 주변은 갤러리 등을 설치하여 시선차단 및 냉각수 비산 방지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시 가능한 상부 기계실 없는 형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은 빗물저장시설 및 부대설비(필터, 펌프 등)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은 해당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허가시 소방서 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설치 세부 내역 건축 협의 시 검토 할 것임)

- 건축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철저토록 할 것
- 건축 공사시 연결송수관설비 주배관(입상배관) 설치가 완료되면 상시 사용이 가능토록 할 것
- 건축 구조의 내진설계와 별도로 본 건축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필로티 주차장 포함) 내진규정에 적정토록 설계·시공토록 할 것
- 자동화재 탐지설비 수신기는 수위실 등 상시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 할 것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계획 시 수직연소 확대방지용 스프링클러헤드(윈도우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를 계획 할 것 ⇒ 창문에서 0.6m이내, 헤드간 1.8m 간격으로 설치

○ 적용소방시설

- 임시소방시설 : 소화기구, 비상경보장치
- 소화설비 : 소화기구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
- 피난구조설비 : 유도등, 피난기구(완강기)
- 소화용수설비 : -
- 소화활동설비 : -

【 공통조건 】- 해당되는 조건 이행

○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대상 변경
  ▶ (기존)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변경)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필로티형 주차장에도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대상은 필로티에 SP헤드 설치
- 기존, 필로티주차장에 적용된 물분무 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 허용 불가
  ▶ (기존)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제외 가능 => (개선) 스프링클러 반드시 설치
  ▶ 필로티 부분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시 보온을 철저히 한 습식 또는 준비작동방식 등으로 적용(동파우려)

○ 화재 시『수직연소 확대 방지용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 외창 인근 윈도우 스프링클러 헤드 적용
- 스프링클러설비 적용대상 전 층에 적용
- 외기 창문으로부터 0.6M 이내의 위치에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 헤드 간 1.8m간격, 기존헤드와 별개 설치

○ 건축허가 동의 시 외장재 사전검토

- 건축도면 중 외장재료 표기 도면 제출 확인
- 건축허가 동의 시 가연성 외장재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

○ 필로티 주차장있는 대상의 주출입구

- 주출입문을 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은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원칙)
- 여건상 불가시, 주 출입문을 자동폐쇄장치와 연동되는 '갑종방화문' 이상으로 설치
- 화재 시 피난통로로 열기 및 농연 차단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

○ 2021년 제17차 건축위원회 : 개최일자 2021.9.9.(목)

○ 방 법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서면심의】

연번	심의종류	건축주	대지위치	공종	층수 (지상/지하)	연면적(㎡)	주 용 도
17-3	도로명(구의강변로) 기준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 건축	(주)*****	구의동 599-2번지	증축 및 대수선	5 / 1	649.05㎡	근린생활시설

【의결내용】

1. 구조물 해체시 구조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증축에 따른 하중 증가가 건물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3. 주차1은 기둥 및 주차면으로 인하여 진출입이 어렵고 인접보도를 통해 진출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치 조정 또는 안전시설 대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지하 비상탈출구 및 외부계단에서 도로로의 피난동선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5. 지하층과 복층인 근린생활시설의 층간 방화구획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6. 조경계획은 한국에서 자라는 아카시아는 '아까시' 나무로 낙엽교목이므로 상록교목수종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7. 기존 구조체와 신설 계단 연결에 대한 구체적 상세도와 계산근거 및 시공순서도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8. 본 건물은 계단실의 이동 및 승강기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벽체의 철거 및 구조부재 신설이 많아 수직하중 변동과 지진하중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므로 기존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구조건전성 확인 및 구조보강설계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9. 이전 설치되는 주계단의 구조형식(RC/SS)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10. 승강기 상부 슬래브 타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서포트 하부에서 지지하는 방안 혹은 철골부재 위에 시스템 서포트 설치하는 방안 등)
11. 필로티 주차장 구간 지진하중에 대한 기둥 상세해석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2. 착공 전 주변 건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계측계획을 및 외부 OPEN계단 설치 시 인접 공동주택 측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 사항으로 [조건부의결]로 결정 합니다.
판 정	조건부 의결

< 기타 심의 조건 : 구의동 599-2번지>

【공통조건】- 해당되는 조건 이행

○ 건축물의 주차.피난.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위치, 수거가 용이한 위치에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확보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위에 조적, 목재, 휀스 등으로 차폐시설(규격 1.5m×2m, 높이 1.5m이상 / 대지 등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을 계획하기 바라며 사용승인 신청 시 설치자료를 제출 할 것.

○ 도시형생활주택 공통조건

- 1층 필로티의 천정은 비가연성재료로 마감하고, 필로티층 상부(2층 바닥)는 내단열로 하거나 외단열로 계획 시 비가연성재료를 사용할 것
- 6층 이상(필로티층 포함)으로 계획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스프링클러 설치할 것.
- 30세대 이상은 입주민의 커뮤니티를 고려하여 20㎡ 이상 또는 세대당 0.5㎡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검토 할 것

○ 6층 이상 건축물 외단열 시스템 시공 시 비가연성(불연·준불연·난연) 외단열재를 사용 할 것.

○ 연면적 2,000㎡ 이상 신축건물은 옥상조경 조성할 것.(그 밖의 건축물은 권장)

○ 6층 이상 신축건물은 실외기 설치공간을 별도 확보할 것.(그 밖의 건축물은 권장)

○ 쾌적한 주거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대지 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 할 것.

- 다가구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 법정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50%이상, 그 밖에 건축물 : 법정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40%이상(단독주택 제외)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환경성능,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해당 건축물 규모에 따라 반영할 것

- 적용대상: 연면적 합계 500㎡ 이상(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31호 참조)

○ 냉방시설의 배기장치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건축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또는 발코니, 노대, 옥상 등에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등 노출하여 설치 시 가림막(30% 이상) 설치, 냉방설비의 응축수, 냉매비관의 외부 노출 금지

※ 기타안내

- 우리구에서는 개별 건축물마다 특색있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상에 설치하는 냉각탑 주변은 갤러리 등을 설치하여 시선차단 및 냉각수 비산 방지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시 가능한 상부 기계실 없는 형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은 빗물저장시설 및 부대설비(필터, 펌프 등)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은 해당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허가시 소방서 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설치 세부 내역 건축 협의 시 검토 할 것임)

- 건축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철저토록 할 것
- 건축 공사시 연결송수관설비 주배관(입상배관) 설치가 완료되면 상시 사용이 가능토록 할 것
- 건축 구조의 내진설계와 별도로 본 건축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필로티 주차장 포함) 내진규정에 적정토록 설계·시공토록 할 것
- 자동화재 탐지설비 수신기는 수위실 등 상시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 할 것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계획 시 수직연소 확대방지용 스프링클러헤드(윈도우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를 계획 할 것 ⇒ 창문에서 0.6m이내, 헤드간 1.8m 간격으로 설치

○ 적용소방시설

- 임시소방시설 : 소화기구, 비상경보장치
- 소화설비 : 소화기구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
- 피난구조설비 : 유도등, 피난기구(완강기)
- 소화용수설비 : -
- 소화활동설비 : -

【 공통조건 】- 해당되는 조건 이행

○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대상 변경
  ▶ (기존)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변경)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필로티형 주차장에도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대상은 필로티에 SP헤드 설치
- 기존, 필로티주차장에 적용된 물분무 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 허용 불가
  ▶ (기존)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제외 가능 => (개선) 스프링클러 반드시 설치
  ▶ 필로티 부분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시 보온을 철저히 한 습식 또는 준비작동방식 등으로 적용(동파우려)

○ 화재 시『수직연소 확대 방지용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 외창 인근 윈도우 스프링클러 헤드 적용
- 스프링클러설비 적용대상 전 층에 적용
- 외기 창문으로부터 0.6M 이내의 위치에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 헤드 간 1.8m간격, 기존헤드와 별개 설치

○ 건축허가 동의 시 외장재 사전검토

- 건축도면 중 외장재료 표기 도면 제출 확인
- 건축허가 동의 시 가연성 외장재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

○ 필로티 주차장있는 대상의 주출입구

- 주출입문을 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은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원칙)
- 여건상 불가시, 주 출입문을 자동폐쇄장치와 연동되는 '갑종방화문' 이상으로 설치
- 화재 시 피난통로로 열기 및 농연 차단